

2026년 제1회 진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

2026년 제1회 진주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(일반임기제)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27일

진주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임용분야	근무 부서	임용직급	임용 인원	근무 기간	담당 예정 업무	비고
정 책 지 원 관	진 주 시 의 회 사 무 국	행정 7급 (일반임기제)	1명	1년	◦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 ◦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 ◦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◦ 의원의 5분 자유발언, 시정 질문·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조사·취합·분석 지원 ◦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 ◦ 그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	주40 시간

※ 근무 기간은 근무 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 등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

2. 임용근거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, 제27조(신규임용)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,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,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, 「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

3. 응시자격 기준

가. 공통사항(기준일 : 면접시험 예정일)
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,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,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<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>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<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>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“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-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.
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 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 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
○ 거주지 : 제한없음

○ 성 별 : 제한없음 (단, 남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)

○ 연 령 : 7급 - 20세 이상(2006. 12. 31. 이전 출생자)

나. 응시자격 요건(기준일 : 면접시험 예정일)

임용분야	임용직급	자 격 기 준 (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)
정 책 지 원 관	행정 7급 (일반임기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학사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◦ 3년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◦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【직무분야 실무경력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국회, 지방의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대학, 연구소, 기업(사업체) 등에서 법률자문, 법무, 공공행정, 정책개발 분야의 연구·조사·분석·입법지원 관련 실무경력

※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직무분야의 실무(연구)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

※ 실무경력 인정 범위 :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, 전임근무(1일 8시간)가 아닐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 될 것

※ 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일반임기제의 경우 공고일 현재 직무 관련 분야에서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)

4. 보수 수준

○ 보수 수준 : 연봉제 적용,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의거 책정함

구 분	기준액(하한액)	비고
일반임기제7급(상당)	50,272천원	주40시간

※ 신규임용자 연봉 책정은 하한액 책정이 원칙이며,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전 협의 결정함.

(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반영)

※ 연봉 외 수당 :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,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별도 지급(가족수당, 직급보조비, 정액급식비, 시간외수당, 연가보상비, 건강검진비, 복지포인트 등)

※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최초 임용일부터 3개월 이내)

5. 시험방법

가. 1차 시험 : 서류전형

○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요건 등 형식 요건 심사

※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제4항)

나. 2차 시험 : 면접시험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

○ 인성, 공직관, 전문성 등 업무 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

○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, 능력 등 적격성 검증

※ 평정요소 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
(각 평정요소별 상·중·하 등급 및 점수로 평정)

○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순위로 합격자 결정

※ 불합격 기준

-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“하” 평정
-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“하” 평정

6. 시험일정

응시원서 접수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	면 접 시 험	최종합격자 발표
2026. 11. 9.(월) ~ 11. 11.(수)	2026. 11. 25.(수) 예정	2026. 12. 4.(금) 예정	2026. 12. 9.(수) 예정

※ 재공고, 시험일정 변경, 장소 통지, 합격자 발표 등은 진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
(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봄)

7. 응시원서 접수

가. 접수기간 : 2026. 11. 9.(월) ~ 2026. 11. 11.(수) <3일간>

나.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

-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(09:00~12:00, 13:00~18:00)에만 가능
-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

※ 등기우편 접수를 할 경우 서류도착 여부 진주시의회사무국 총무팀(☎ 055-749-8956)
으로 전화 확인 요망(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“응시원서 재중” 글자 표기)

- ▶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,
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
- ▶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‘통상환증서’를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

※ 퀵서비스, 택배를 통한 접수는 불가하며(훼손·유실 우려), 대리인 방문접수는 가능함.

※ 대리접수, 우편접수시 미비한 서류 등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.

다. 접 수 처 : 진주시의회사무국 총무팀 (진주시의회 1층)

※ 우편접수 주소 :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, 진주시의회사무국 총무팀 (우 52789)

※ 응시원서 별지(응시원서, 이력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별지를 출력하여 사용

8. 제출서류

구 분	내 용	비고
1. 응시자 제출 서류 목록표 1부	▶ 목록별로 제출 여부 표시	별지 제1호 서식

구 분	내 용	비 고
2. 응시원서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응시수수료: 진주시 수입증지 - 7급: 7,000원 ▶ 판매처: 진주시청 1층 민원여권과 ※ 정부수입인지 및 타 지자체 수입증지 제출 불가 	별지 제2호 서식
3. 이력서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이력서 상의 경력과 자격은 경력증명서, 자격증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만 기재 ※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기재 금지 	별지 제3호 서식
4. 자기소개서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A4 3매 이내 ※ 성명, 나이, 학교명, 출생지,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알 수 있는 내용 기재 금지 	별지 제4호 서식
5. 직무수행계획서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A4 4매 이내 ▶ 응시 분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, 향후 계획, 발전 방안 등을 자유롭게 기술 	별지 제5호 서식
6.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제출할 경우 제출 불요 	별지 제6호 서식
7. 주민등록초본 1부 ※ 공고일 이후 발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▶ 남자의 경우 병역 사항 포함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불요 	
8.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(원본 지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(학위증서) 모두 제출 	
9. 응시 분야 관련 자격증(면허증) 사본 1부 (원본 지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유효기간: 면접시험일 기준 ▶ 갱신 또는 재발급 사실이 있는 경우 갱신 또는 재발급된 자격증을 제출 	

구 분	내 용	비 고
10. 경력(재직)증명서 1부 (원본 또는 사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발행기관 직인 날인 및 증명서 발급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 기재 ▶ 재직 기간, 근무 부서, 재직 당시 담당 업무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함 ▶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‘주당 근무시간’ 을 명시하여야 하며, 근무 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 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 자료 제출(미제출 시 불인정) ※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응시 분야 근무 여부가 모호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응시자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응시 분야 직무임을 확인 받고 제출 ▶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에 응시 분야 근무여부가 모호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【양식9호】 서식 ‘경력사실 확인 증명서’ 추가 제출 ※ 회사가 폐업·파산·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·법인등기부등본·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 및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 	
11.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(경력,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민건강보험(www.nhis.or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발급 ▶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전체 기간 발급 	
12.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	▶ 별지 양식	별지 제7호 서식
13.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	▶ 별지 양식	별지 제8호 서식
14. 공정채용확인서 1부	▶ 별지 양식	별지 제9호 서식
15.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1부		별지 제10호 서식
16 증명사진	▶ 3.5×4.5cm 1매	

구 분	내 용	비 고
	※ 제출 서류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 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※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, 발행기관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함 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 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 첨부 ※ 제출 서류 확인 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 취소 처리되며, 임용 후에도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	

9. 재공고 안내

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.

※ 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

10. 기타(유의) 사항

- 가. 응시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제출 서류는 사본 제출 및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, 부득이한 경우 원본 제출 시에는 반환 요청이 가능합니다. 사본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원서 접수 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- 다.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, 제출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라. 특히, 제출 서류(학력·경력·자격 증명서 제외)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,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마.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, 접수완료된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바.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행 7일 전까지 진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 - 시험 관련 사항은 개별 통지 없이 진주시의회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 게재합니다.

※ 공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.

- 사.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합격 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아.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.
- 자. **이력서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출생지, 학교명,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작성을 금지합니다.**
- 차. 진주시의회인사위원회에서 동일 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- 카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6조(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)에 따라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.
- 타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7조(정치운동의 금지)에 따라 공직자는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정당미가입 확인서(또는 정당 탈퇴 확인서) 제출을 요청합니다.
- 파. 「공무원연금법」 제50조(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)에 따라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될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됩니다.
- 하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채용 절차 및 임용분야 관련 문의 : 진주시의회사무국 총무팀(☎ 055-749-8956)